

영등포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의 개정예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입법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제정내용

-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중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건수와 수입금 비중이 큰 주요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정함
 -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를 1건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를 1건당 1,000원에서 3,000원으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수수료 1건당 8,600원에서 20,000원으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수수료 1건당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1건당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해 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시의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이의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삭제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 수수료 현실화
- 시행규칙에 수수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배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은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신고업 수수료 무료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및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에 의거 수수료액을 조정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해 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시의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이의 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법령의 폐지, 제정, 개정에 맞게 사무명 및 수수료액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시에 많이 인상되었기 대민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 28.

보 고 자 : 김 병 옥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1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19567호, 2006.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20310호, 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07.10.4>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 신고 또는 변경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신청을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5.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